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7.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 률안	제6780호	김민전의원	'24. 12. 20.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6.30.) 상정
	제10215호	김준혁의원	'25. 4. 29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8.)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7. 8.)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5 중 “제11조의3을”을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제66조의4제1항 단서 중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를 “,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제11조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호 및 제6호의----------. ② · ③ (현행과 같음)